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위반행위 등

신고포상금

지급대상

포상금 지급 대상	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
-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- 신고인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인 경우 (외국인대상 부당요금 신고자는 예외)	- 교통 관련 업무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-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-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,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- 신고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

지급기준

위반 행위	포상금
무면허 개인택시	50 만원
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	100 만원
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	12 만원
개인택시 불법양도 · 양수	50 만원
택시 승차거부 행위	5 만원
택시 부제 위반행위	5 만원
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	5 만원
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	30 만원
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	50 만원



문의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 032-880-4525